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07 발의연월일: 2025. 3. 13.

발 의 자:조승환·안철수·이성권

김성원 · 김종양 · 인요한

권영진 · 최은석 · 나경원

곽규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려운 한자어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일례로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의 '수괴'라는 법률용어는 한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에 '우두머리'로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은 '수괴'라는 용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수괴'를 알기 쉬운 용어인 '우두머리'로 변경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안 제5조 등).

법률 제 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수괴(首魁)"를 "우두머리"로 한다.

제45조제1호 · 제2호 및 제3호 중 "수괴"를 각각 "우두머리"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괴"를 각각 "우두머리"로 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괴"를 "우두머리"로 한다.

제5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괴"를 각각 "우두머리"로 한다.

제52조의5제2호 단서 및 제3호 중 "수괴"를 각각 "우두머리"로 한다.

제52조의6제3호 중 "수괴"를 "우두머리"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괴"를 각각 "우두머리"로 한다.

제5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중 "수괴"를 각각 "우두머리"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괴"를 각각 "우두머리"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수괴"를 "우두머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	제5조(반란)	
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		
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처벌한다.		
1. <u>수괴(首魁)</u> : 사형	1. <u>우두머리</u>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45조(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5조(집단 항명)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한다.		
1. 적전인 경우: <u>수괴</u> 는 사형,	1 <u>우두머리</u>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		
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	2	
역인 경우: <u>수괴</u> 는 무기 또는	<u>우두머리</u>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		
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u>수괴</u> 는 3년	3 <u>우두머리</u>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		
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	협박 등) ①	
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	-----	----	-------

- 1. 적전인 경우: <u>수괴</u>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 2. 그 밖의 경우: <u>수괴</u>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
 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
 역

② (생략)

제52조(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저

- ① (생 략)
- ②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제49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u>수괴</u>는 제 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처벌한다.

1. · 2. (생략)

제52조의3(상관에 대한 집단상해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u>수괴</u>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1 <u>우두머리</u>
	2 <u>우두머리</u>
	② (현행과 같음)
 	52조(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u>우두머리</u> -
. 1	1. • 2. (현행과 같음)
쉐	52조의3(상관에 대한 집단상해
	등) ①
	1 0 F pl al
	1 <u>우두머리</u>

- 이상의 징역
- 2. 그 밖의 경우: <u>수괴</u>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
 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
 역
- ② (생략)
- 제52조의5(상관에 대한 중상해)
 제52조제2항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
 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생략)
 -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만, 제52조의 의3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사람 중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3. 그 밖의 경우(제52조의3제1 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u>우두머리</u>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의5(상관에 대한 중상해) -
 1 /처레리 가ბ)
1. (현행과 같음) 2
<u>우두머리</u>
3
<u> 우두머리</u>

제52조의6(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제52조의6(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경우(제52조의3제1	3
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u>수괴</u> 는 제외한다): 무기 또는	<u> 우두머리</u>
5년 이상의 징역	
제55조(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제55조(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	협박 등) ①
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u>수괴</u> 는 5년 이	1 <u>우두머리</u>
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	
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u>수괴</u> 는 2년	2 <u>우두머리</u>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	
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4조 또는 제55조의 죄를	②
범하여 초병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	

- 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만, 제55조제1 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그 밖의 경우(제55조제1항제 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 <u>괴</u>는 제외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58조의3(초병에 대한 집단상해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적전인 경우: <u>수괴</u>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 의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 상의 징역
 - 2. 그 밖의 경우: <u>수괴</u>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 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생 략)
- 제61조(특수소요) 집단을 이루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협박 또는 손괴 의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1	
<u> 우두머리</u>	
2	
두머리	<u></u>
제58조의3(초병에 등) ①	
1	<u>우두머리</u>
2	- <u>우두머리</u>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특수소요) -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u>수괴</u>: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2. · 3. (생략)

-----.

1. <u>우두머리</u>-----

2. · 3. (현행과 같음)